

##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22-129
----------	----------

제 출 자	거창군수
-------	------

### 1. 제안이유

공공하수처리시설 정비·확충사업으로 인한 개인하수처리시설 폐쇄로 분뇨 수거물량 감소와 인건비 상승에 따른 수익성 저하로 경영악화가 심화된 분뇨수집·운반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원가산정 용역 결과에 따라 현실화율에 가깝게 분뇨 수집·운반 수수료를 인상하고자 함

### 2. 주요내용

가. 분뇨 수집·운반 수수료 인상(안 별표 6)

1) 수거식 화장실

가) 10리터 기준 174원 ⇒ 185원

나) 11원 인상, 인상률 6.3퍼센트

2) 개인하수처리시설

가) 기본요금

(1) 750리터까지: 17,100원 ⇒ 20,080원

(2) 2,980원 인상, 인상률 17.4퍼센트

나) 초과요금

(1) 100리터마다: 1,150원 ⇒ 1,350원

(2) 200원 인상, 인상률 17.4퍼센트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하수도법」 제41조제4항, 제47조

나.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

다. 협의: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

라. 기타사항

- 1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- 2) 입법예고
  - 가) 예고기간: 2022. 10. 20.~11. 9.
  - 나) 예고결과: 의견없음
- 3) 비용추계서: 해당사항 없음
- 4) 성별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
거창군 조례 제 호

##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 별표 6 개정규정은 2023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[별표 6]

분뇨 수집·운반 및 처리 수수료 산정기준(제24조제1항 관련)

1. 수거식 화장실

부과기준	수수료		
	수집·운반	처리	계
10리터	185원 174원	15원	200원 189원

2. 개인하수처리시설

구 분	수수료		
	수집·운반	처리	계
기본요금 (750리터까지)	20,080원 17,100원	1,125원	21,205원 18,225원
초과요금 (100리터마다)	1,350원 1,150원	150원	1,500원 1,300원

비고

1. “수집·운반” 이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포함
2. “처리” 란 분뇨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유입처리를 말함